



포장폐기물의 자율재활용체계 구축방안

A Construction program of self-control Recycling system for Packaging Waste

본고는 지난 달 14일
환경부와 자민련 주최로 열린
'포장폐기물 처리대책
개선방안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제 중 하나로
업계의 폐기물재활용체계구축에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박 준 우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폐기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폐기물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폐기물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재활용을 통한 원천감량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도 원천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재활용의 증대는 또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에서 점차 그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폐기물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재활용의 증대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경제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수단이 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민간의 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수행되며 재활용산업도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재활용은 그것이 국가경제적으로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주는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사업의 사적 수익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활용활동은 위축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들 개인 재활용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으로 재활용률을 올리고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재활용서비스를 공공재로서 공급하고자 하는

공적 공급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전 반적인 재활용의무는 국가가 지되 생산자와 배출자, 지자체, 재활용사업자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비용분담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보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국가적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재활용의 중심으로 하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도입배경은 생산자가 소비를 주도하는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찾아질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는 소비자이나 배후에는 끊임없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생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물 오염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생산자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촉진에 있어서도 생산자책임의 확대가 효과적이다. 즉 생산자는 생산자 주도에 의한 소비유형의 개선으로 원천감량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품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 회수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재활용 공정에 필요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자 스스로 재생원료의 주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또 가격전가를 통하여 사회구성원간 폐기물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 폐기물 비용의 내부화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 정부도 일찍이 이러한 생산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과하는 예치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예치금 제도는 생산자가 스스로 재

활용의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어 생산자는 예치금만 납부할 뿐 실제로 생산자가 재활용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역할을 분담하거나 또 자신이 납부하는 재활용비용에 대하여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예치금 제도는 생산자 측에서는 납부의무만 있고 통제권한이 없는 환경세로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역할 증대를 통한 재활용의 증대라는 당초 취지는 많이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현행 재활용체계를 검토하여 각 경제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생산자의 역할 증대를 보장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일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분리배출·선별·재활용 등 일련의 폐기물 흐름별 생산자·재활용사업자·배출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제반활동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중심역할을 하는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의 구축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한편 폐기물 중에서도 포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은 폐기물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 포장폐기물은 소비와 직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제흐름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체계의 구축은 포장폐기물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포장폐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는 먼저 현행 재활용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2 우리나라의 현행 재활용체계의 문제점

2-1. 재활용 활동의 사경제 행위화

우리나라는 재활용에 대한 공공재적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활용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더 이상 자원회수를 통하여 민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경제 활동이 아니며 폐기물의 처분의 한 수단으로 새로이 인식되어야 한다.

재활용의 사적 수익성은 점차 떨어지는 반면 재활용의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상대적 경제성은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 재활용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이상의 사회편익이 발생하며 사업수행자의 사적 편익보다 외부편익이 더 큰 전형적인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재활용은 공공재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활용의 사회적비용 : 재활용비용 + 재활용과정의 환경오염비용, 재활용의 사회적 편익 : 재활용수입 + 폐기물처리비용절약 + 처분과정의 오염방지비용).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재활용을 사경제 분야에 속하는 자원회수산업활동으로 인식하여 정부 공급보다는 민간기업에 일임함으로써 재활용은 적정수준 이하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하여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2. 공공재 공급비용의 민간부담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은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나 유가성 폐기물은 재활용사업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유상 매입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은 수집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은 주민의 분리배출서비스를 통한 재활용사업자의 선별비용절약액과 실제 수집비용과 매입가격의 차이 뿐이며 나머지는 재활용사업자가 부담, 결과적으로 주민과 재활용상품의 소비자가 공공부분에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3. 정부(지자체)와 민간부분의 역할분담 부적절

현행 폐기물수집체제 하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은 정부(지자체)로 일원화하여 지자체가 재활용 산업에 대한 원료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은 재활용사업자의 직접 수집과 지자체가 수집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또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직접 수집량도 달라지고 재활용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하는 수량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집체제는 안정적인 원료공급

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집비용의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간의 분담도 불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4. 재활용의무체계와 재활용사업 체계의 연계성

생산자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재활용행위의 공공재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재활용이 순수히 사경제적 활동이라면 이윤동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용의 공공재적 특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책임과 의무는 생산자에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재활용사업은 재활용사업자의 사적 영리활동에 전속시키고 있어 생산자의 의무수행 활동과 재활용사업자의 영리활동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생산자는 재활용비용만 부담(예치금 납부)하며 실제 재활용과정에의 참여가 없다.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으며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의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간섭이나 참여가 없으며 사업자단체는 반환 예치금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비용보전을 받거나 사업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결국 재활용사업자 중심의 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생산자는 재활용과정에서 소외되어 생산자는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권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2-5. 재활용정책의 비현실성

재활용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일정 범위내의 재활용에 한정된다. 적정수준 이상의 재활용은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정 재활용 목표율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활용정책의 핵심 사항이 된다. 재활용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에 대한 상대적 검증이 없이 재활용의 범위와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재활용의 사적 수익성과 국가적 경제성을 혼동함으로써 정책목표로서의 적정 재활용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재활용의무를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주도의 재활용이 국가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활용정책의 목표와 실행방안은 재활용산업의 능력과 생산자의 비용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재활용산업의 능력은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공급능력, 재활용사업자의 처리능력 이외에 재활용 된 재료나 상품의 소비능력까지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당국은 지자체나 재활용사업자에 의한 폐기물 수집능력이나 재생업체의 재생능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현실과약을 하고 있으나 재생된 원료나 상품의 소비나 수요에 대한 현실적 전망의 부족으로 비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재활용폐기물의 회수와 재활

용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회수만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수된 폐기물의 실제 처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형편이다.

3. 대책

3-1. 생산자중심의 재활용체계 구축

효과적인 재활용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재활용체제를 재활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체제는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 활동의 중심에 서서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방법과 재활용사업자를 선택하게 보장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경쟁체제 유지를 통하여 수요자로서의 생산자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예치금 납부로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정책제도 또는 제도간 경쟁체제 유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2. 재활용의 공공재 개념 정립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체계 추구에 있어서는 재활용 활동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민의 분명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원회수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일임하나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재활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

활용 폐기물의 회수체계를 조직, 운영하며 수집과 재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정립하여야 한다.

3-3. 정부, 생산자, 소비자간 역할분담 방안

우리나라는 이미 분리배출체제가 정착,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 처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분리수집은 지자체 수집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수집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확대생산자책임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지자체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수집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와 생산자간의 비용분담은 생산자와 지자체간의 계약을 근거로 지자체가 분리수집된 폐기물을 유상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의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수집비용 하락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지자체가 민간이 수집을 기피하는 분야까지 수집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지자체의 무리한 수집시설 확충과 민간과의 중복투자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집 목표율을 차등화하거나 구체적인 목표율을 부과하지 말고 포괄적인 분리수집 의무와 분리수거체제의 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재활용 목표율이 올라가고 지자체의 분리수집이 늘지 않으면 목표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대한 수집의무를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이다. 장기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집 목표율을 정하여 주되 현 재로서는 수집률 부족문제보다 의무율제도의 시행상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추상적인 분리수집의무 부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모든 지자체는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원화된 수거체계를 유지하여 재활용 폐기물이 최대로 수집되게 하며 또 관할구역 내에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4. 재활용 목표율의 현실화 : 자발적 협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제도 시행

재활용은 공공의 입장에서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게 일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임은 재활용 범위가 국가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성 범위 내로 한정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재활용사업자의 관점을 벗어나 국가 경제 전체 입장에서 적정 재활용목표율을 정하고 재활용의무자로 하여금 이 목표율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재활용은 그것이 다른 폐기물 처분수단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범위 내 즉 적정률 이내에서 이루어질 때 정당화된다. 그런데 적정 재활용률은 재활용기술과 함께 다른 처리기술(중간처리, 소각, 매립기술)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이나 중간 및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폐기물 종류별로 다를 뿐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재활용 목표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 재활용 목표율은 무조건 매년 상향 조정될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적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실적인 신축적인 재활용 목표율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일방적인 재활용 목표율의 결정보다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업계의 자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계의 의지만으로 자발적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단체간 협정과 사업자간 협정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또 주기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활용 목표율의 결정은 자발적 협정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발적 협정체제로 가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협정을 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재활용목표율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자발적 협정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즉 재활용 목표율은 정부에서 결정하되 재활용목표율 결정 위원회제도를 운영하여 정부의 결정과정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므로써 목표율이 현실적이고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를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재활용 실적 발급권자에 대한 제한과 실적의 인증문제, 거래실태의 추적에 따르는 행정력 문제 등으로 당분간은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7. 지정재활용사업자제도 시행

재활용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폐기물처분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용도 비용이 소모되며 재활용과정의 오염도 상당하다. 따라서 모든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이 효율적이고 환경보전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나 시설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업자에 의한 재활용은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재생사업자에 의한 폐기물 불법처리가 만연하여 있는 현실에서 모든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실적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재활용 실적 판매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실적 발급제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권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활동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재활용실적을 발급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능력이나 시설을 갖춘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재활용사업자를 지정하고 생산자는 이들 지정사업자가 발행한 재활용실적만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거래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제약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8. 생산자기구(PRO)의 설립을 통한 자원재활용체제의 운영

일반적으로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생산자는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이 있으며 재활용은 본래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재활용사업자를 찾아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조직이 설립된다면 생산자의 편의는 증가할 것이며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생산자기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생산자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살려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재활용의무 이행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개별 생산자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재활용실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의 재활용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산자기구가 조직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직접 투자와 경영 참가를 시도한다면 재활용업무의 수직적 통합과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재활용 효율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자기구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생산자 스스로 설립하거나 다른 제3자가 설립한 조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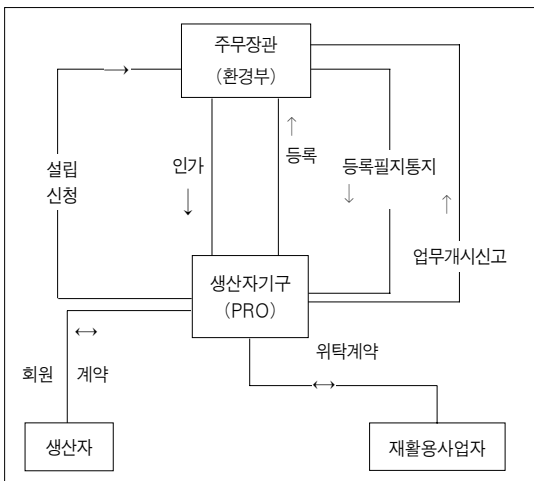
가입함으로써 예치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생산자자율재활용기구의 설립과 인가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가입자를 대행하려 재활용의무를 신고하고 재활용사업자(사업자단체)로부터 재활용실적 구입하므로써 생산자를 재활용의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회원 생산자에 대하여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또 재활용비용의 회계를 보게 하므로써 생산자의 통제를 받게 한다.

또 이들 기구는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설립제도를 보장하고 인가요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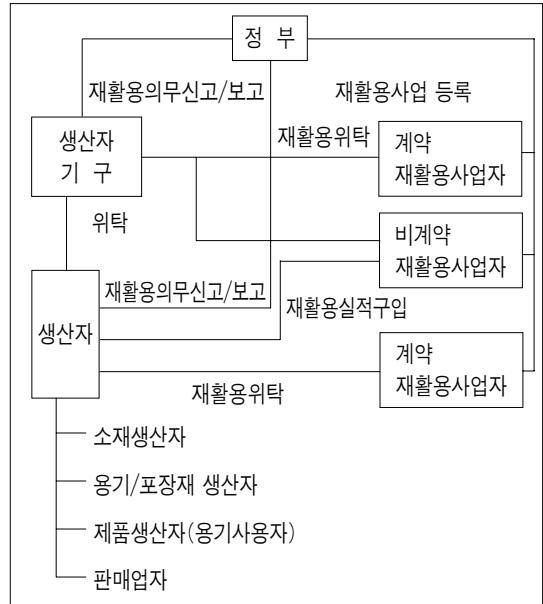
이상의 각 제도 시행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재활용체제는 [표 2]와 같다.

생산자기구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단계로 복수설립과 자유설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생산자기구는 단순한 사적 계약에 위한 위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활용의무가 생산자에서 생산자기구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도 시행 초기의 일정기간

[표 2] 각 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체계



[표 3] 생산자기구의 설립운영을 전제로 한 자율재활용체계



은 최소한의 인가요건과 의무부과가 필요할 것이며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민법상 단체 설립요건 충족
2. 비영리법인일 것
3. 회원 요건

생산자 회원 확보(취급품목 시장 전체 출하량의 5% 이상 점유)

4. 재활용 능력 요건 : 회원 의무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재활용시설 보유 또는 동이상의 재활용시설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와의 위탁계약체결
생산자기구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징수하며 회원의 재활용의무를 이전받는다. 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기구의 설립신고와 회원상황과 재활용의무의 신고, 재활 의무 이행결과 보고의 제반 의무를 부담한다. 생산자기구의 업무절차는 [표 3]과 같다. [ko]